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전된 선거비용 등의 반환을 위한 징수 면탈죄 신설 등〉
■ 주진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61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보전된 선거비용 등의 반환을 위한 징수 면탈죄 신설 등	3
2. 판결 확정 전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압류제도 도입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진우의원 등 21인
2. 제 안 일 : 2024. 11. 27.
3. 회 부 일 : 2024.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및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당선무효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의 정당후보추천자 등의 경우에는 추천 정당이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당 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납부하도록 하며, 정당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국고 등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합당 등으로 없어져 해당 정당에게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거나, 반환하여야 할 보전받은 선거비용에 대한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정당의 재산을 은닉·탈루하려는 시도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정당이 국고에 반환하여야 하는 보전 선거비용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압류를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정당 등이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재산에 대하여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등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추천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의 형이 선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경우에는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이 추천 정당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반환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추천 정당이 분당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정당과 존속하는 정당이 연대하여 반환의무를 지도록 명시함(안 제 259조의2, 제265조의2 및 제265조의3 등).

Ⅲ. 검토의견

1. 보전된 선거비용 등의 반환을 위한 징수 면탈죄 신설 등

개정안은 보전된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정당 등이 징수를 면탈¹⁾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²⁾·탈루³⁾하는 경우 등에 있어 이를 처벌하는 벌칙을 신설하고,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정당과 합당 또는 분당하더라도 반환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9조의2(보전된 선거비용 등의 반환을 위한 징수 면탈 등의 죄) ① 제26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보전된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추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6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면탈”이란 사전적 의미로 죄를 벗다는 뜻이지만, 법적 용어로는 의무나 책임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함.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하고 있음.

2) “은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을 감추어 타인의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함.(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3) “탈루”란 밖으로 빼내 새게 함을 의미함.(표준국어대사전)

<신 설>

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5조의3(보전된 선거비용 등의 반환의무의 승계) ①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제265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추천 정당이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경우에는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이 추천 정당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반환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제26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추천 정당이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후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추천 정당이 분당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정당과 존속하는 정당(추천 정당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연대하여 추천 정당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반환의무를 진다.
--	--

현행법은 선거공영제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정 조건에 따라 선거비용 등을 보전하도록 하면서도 선거비용의 초과지출(제263조), 당선인의 선거범죄(제264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제265조)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정당(대통령선거, 비례대표선거) 또는 후보자(지역구선거)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265조의2제1항).⁵⁾

4) “선거공영제”란 국가 등이 나서서 선거운동 비용을 부담해줌으로써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말함.(한국정치법학연구소, “선거비용 및 선거공영제 개선방안 연구”, 2018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p.6) 「공직선거법」은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일정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고 있음.

5)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 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는 해당 비용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인 만큼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 비용을 환수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⁶⁾

기탁금 및 선거보전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데(법 제265조의2제2항), 납부 의무가 있는 당해 정당·후보자가 기한 내에 기탁금이나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265조의2제3항).

그런데,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미반환자의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현행법상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한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는 실정임.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6) 우리 헌법재판소도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하여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고 필요한 제재임을 판시한 바 있음. (헌재 2024.2.28.선고 2021헌바3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미반환금이 정당의 경우 존재하지 않으나, 후보자 개인의 경우 80명의 미반환금을 합쳐 206억 1,800만원에 달하는 실정임.

《 미반환 현황 》

(인원: 명 / 금액: 백만원(2024. 7. 31. 현재))

선 거 명	반환대상		반환완료		반환진행(미반환)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교육감 보궐선거 (2008년)	1	2,885	-	1,888	1	997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04년)	6	543	6	543	-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2008년)	9	991	9	991	-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2년)	15	2,036	14	1,848	1	188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6년)	33	3,841	24	2,947	9	89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년)	5	723	4	645	1	78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년)	75	2,601	74	2,537	1	64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77	12,707	71	5,569	6	7,138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97	10,392	75	5,401	22	4,99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8년)	60	4,811	42	2,249	18	2,56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45	5,148	24	1,442	21	3,706
총 계	423	46,678	343	26,060	80	20,618

이에 개정안은 보전된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정당 등이 징수를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경

우 등에 있어 이를 처벌하는 벌칙을 신설하고,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라면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정당과 합당 또는 분당하더라도 반환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는 현재까지의 미반환 사례가 모두 후보자 개인 차원이기는 하나, 향후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형이 확정되기 전 합당 또는 분당의 방법으로 반환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의 비용반환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헌법재판소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임을 판시한 바 있음.

<헌법재판소 1995.4.20. 선고 91헌바11, 판례집 7-1, 478>

“어떤 행위를 범죄(犯罪)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犯罪)의 실태와 죄질(罪質) 및 보호법익(保護法益)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立法政策)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 재량(立法裁量) 내지 형성(形成)의 자유(自由)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犯罪)에 대한 법정형(法定形)이 그 죄질(罪質)의 경중(輕重)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평등(平等)의 원리에 반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犯罪)에 대한 형벌(刑罰)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파생되는 비례(比例)의 원칙(原則) 혹은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立法裁量權)이 헌법규정이거나 헌법상의 제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法定形)의 높고 낮음은 단순한 입법정책(立法政策) 당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다른 정당과 합당하더라도 반환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당법」에서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이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⁷⁾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내용을 「공직선거법」에 추가로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분당하더라도 반환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분당의 개념이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정당법」상 정당의 성립은 창당 및 합당(신설합당 또는 흡수합당) 뿐이므로, 개정안에서 말하는 분당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음.⁸⁾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비용반환 규정은 선거공영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용반환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7) 「정당법」 제19조(합당) ⑤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8) 모(母)정당에서 구성원의 변동없이 정당이 2개 이상으로 나뉘어진 경우만 분당으로 볼지, 모(母)정당의 일부 구성원이 다른 정당의 일부 구성원과 합당한 경우도 분당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고 보임.

《 헌법재판소 2024.2.28.선고 2021헌바30 》

“선거공영제는 선거 자체가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선거경비를 개인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자의 입후보를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국민 모두의 공평부담으로 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선거공영제의 내용은 우리의 선거문화와 풍토, 정치문화 및 국가의 재정상황과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이에 관해서는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헌재 2010. 5. 27. 2008헌마491 참조).

구법 조항⁹⁾에 따른 제재는 선거범죄를 저질러 이미 선거라는 국가의 공적 업무를 저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자력이 부족한 국민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하는 효과를 갖지는 않는다. 또한, 이는 일정한 정도 이상의 선거범죄를 저지른 자를 배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을 해 준다면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당선가능성이 없는 후보자들 중에 선거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득표율을 초과하는 득표를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는 후보자도 생길 수 있다는 점, 재선거를 치르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종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게 되므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제재이다.”

따라서, 보전된 선거비용 등의 반환을 위한 징수 면탈죄를 신설하고, 다른 정당과 합당 또는 분당하더라도 반환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용반환 의무규정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과 현행 「정당법」 규정, 현재 우리의 정치문화 및 국민 일반의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9)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규정을 의미함.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비용반환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개정안들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유사 개정안 현황 》

제명	의안번호	발의일자	대표발의	주요 내용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204165호	24.09.23.	김종양의원	당선무효로 된 사람이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당선무효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
	제2205626호	24.11.15.	조은희의원	후보자가 기탁금 반환받거나 선거비용 보전받기 전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
정치 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205622호	24.11.15.	조은희의원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

2. 판결 확정 전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압류제도 도입

개정안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에서 제1항 후단에 따라 추천 정당이 제57조¹⁰⁾와 제122조의2¹¹⁾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추천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u>
<u><신설></u>	<u>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압류를 위탁하고, 「국세징수법」 제3장제2절(제31조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¹²⁾을 준용하여 압류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의2¹³⁾에 따른 권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재</u>

④·⑤ (생략)	<u>산은 압류할 수 없다.</u> ⑥·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	---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채납자가 재산을 사실상·법률상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납액의 징수를 보전하려는 강제처분¹⁴⁾으로서 압류의 본질은 상대방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데 있음.¹⁵⁾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거비용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정당이 판결 확정 전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환의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의 비용반환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의 결과만으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정당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활동의 자유¹⁶⁾를 침해할 여지는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0)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11)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12) 「국세징수법」 제3장(강제징수) 제2절(압류), 제31조제4항제2호는 국세와 관련된 내용

13) 「정치자금법」 제27조의2(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4) 홍준형, 행정법(2011) p.511

1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압류의 내용

16)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가 정당활동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2004헌마456)

“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정당조직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에 개념적으로 포괄될 뿐만 아니라 정당조직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되거나 임의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지기 때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전비용 등 환수의 필요성과 재산권에 대한 제한 정도를 비교 형량
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형 확정 전이라도 정당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
은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정당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
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2

문이다. 또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 조항은 결국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